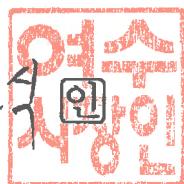


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설기계
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4 월 21 일

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

박 현



여수시 조례 제1745호

붙임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중 “한다.”를 “하며,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
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이용) 공영주기장의 이용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해
당하는 건설기계로 한정 한다.

제4조(정기이용의 신청) <삭 제>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이용료 반환) <삭 제>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탁계약, 수탁자의 의무,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, 위탁취소 등에 관
하여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 [별표 1] 공영주기장 이용료 <삭 제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여수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「건설기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의2제 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 의 명칭은 “여수시 공영주기장” 이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이용방법) 공영주기장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일반이용 :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영주기장에 건설기 계를 주기한 후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</p> <p>2. 정기이용 : 월 단위로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료를 납 부한 후 공영주기장에 건설기 계를 주기</p> <p>제4조(정기이용의 신청) ① 공영 주기장을 정기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신청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하며,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 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이용) 공영주기장의 이용 은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한정 한다.</p> <p>제4조(정기이용의 신청) <삭 제></p>

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의 유무 및 공영주기장의 이용가능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용료)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료 반환) 납부된 정기 이용 이용료(이하 “정기이용료”라 한다)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

2.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

가.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, 그 밖에 정기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: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 1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

제6조(이용료)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.

제7조(이용료 반환) <삭 제>

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
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
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
액을 반환

나.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
경우, 그 밖에 천재지변 또
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
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: 해당 월 미 이용 일수에
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
할로 계산하여 반환

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· ② (생
략)

③ 시장은 제2항의 개신 신청을
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그 결
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
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
다.

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· ② (현행
과 같음)

③ 위탁계약, 수탁자의 의무,
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, 위탁
취소 등에 관하여 「여수시 사
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
따른다.